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224
----------	-----

- 2001. 10. 15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일 이전에 개정공포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수정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내용인 “이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한다

3. 수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부 칙</p> <p>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p>